아주대학교 기숙사 식당 1층
커뮤니티라운지 조성공사 제안요청서

2022. 12.

아주대학교

Ⅰ 사업개요

1. 목적

가. 연결지성 기반 및 문화확산

나. 새로운 개념의 학습·교류공간 필요성과 머물고 싶은 캠퍼스 공간 구현

다.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연결된 커뮤니티 공간 제공

2. 공사위치: 기숙사 식당 1층(주방 및 창업지원공간 제외)

3. 주요사업내용

가. 본교에서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되, 개선된 대안을 제시

1)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된 대안(디자인, 공법, 자재 포함)을 제시

2)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3) 공간 위치와 식사 동선(키오스크 – 배식 – 퇴식) 유지할 것

※ 반드시 현장을 확인할 것

나. 제시(안)에 대한 도면 작성 및 견적서 제출

다. 아래 내역을 포함하여 견적에 반영

1) 새로운 공간 구축을 위한 건축공사 일체(철거공사 포함)

2) 가구 설치: 공간에 필요한 제작 가구 및 기성가구 일체

3) 조명 디자인

▷ 기본계획(안)의 조명 디자인을 기준으로, 등기구 제안 및 납품 (등기구 설치는 학교에서 별도 시행)

▷ 전기 공사는 학교에서 별도 시행하며, 가구내 배선은 금회 공사에 포함

4) 각종 인테리어성 금속 구조물 및 간접 등박스 조성 포함

라. 별도발주

- 전기 : 등기구 설치, 'SYSTEM TRAY 및 RACE WAY' 제작/설치, 콘센트 매입
- 기계설비 : 급배기, 급배수, 냉난방 등
- 가구 및 집기 : 자율배식대, 기타 주방기기 등
- 기타 : 통신, 소방, 음향 등

4. 계약기간(예정): 계약 후 5주

※ 학교에서 별도 발주되는 타공정 공사도 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철저한 공정계획 필요

5. 사업비용: 385,000천원(부가세 포함)

II CONCEPT

학교에서 제시한 기본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부 디자인 변경 및 현장 상황, 일정, 자재 수급을 고려한 대안을 제안하되, 식사동선(배식 및 퇴식)은 유지할 것.

1. CONCEPT

○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 구축

○ 단순 식사공간을 탈피하여, 식사시간외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 (24시간 운영 예정)

2. 공간 구성

1) 커뮤니티라운지 공간과 start-up 공간 분리

- 새롭게 구축될 커뮤니티라운지와 start-up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벽체 설치
- 기본 계획(안)을 기준으로

2) 커뮤니티라운지 공간

- 식사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 주방은 공사에서 제외되나, 홀에 면한 벽면은 금회 공사에 포함
- 커뮤니티라운지 공간의 가구는 178석 좌석 확보할 것 (아래 도면 참조)
- 총 4개의 ZONE으로 구성하고, 각 ZONE별로 다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할 것
- A ZONE 과 B ZONE 사이에 공간이 구획되는 벽체 설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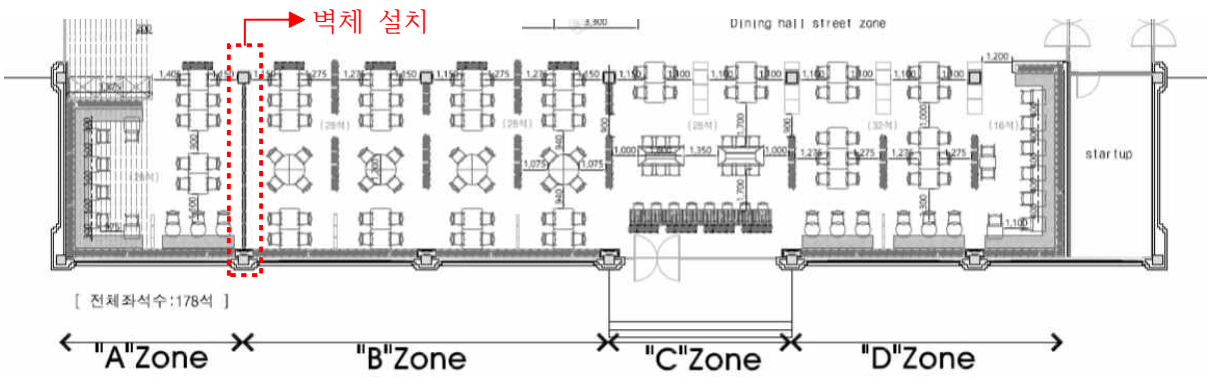

3) start-up 공간

- 마감 : 천장 흡음텍스(m-bar+12t흡음텍스), 벽체 도장, 바닥 데코타일

4) 자판기 및 음수대 설치 공간

- 자판기 및 음수대가 설치될 공간을 구획해야 함.
- 설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사비 증감없이 반영해야함.
- 자판기 설치 공간 조성
- 음수대 설치 공간 조성 : 3,500 × 740
  - ▸ 자외선 살균 소독기, 정수기. 컵회수기 등 학교에서 별도 설치
  - ▸ 전체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제안하되, 높이 350단 조성
- 휴지통 설치 공간 : 높이 900단 조성 (퇴식구 주변, 상세 위치는 추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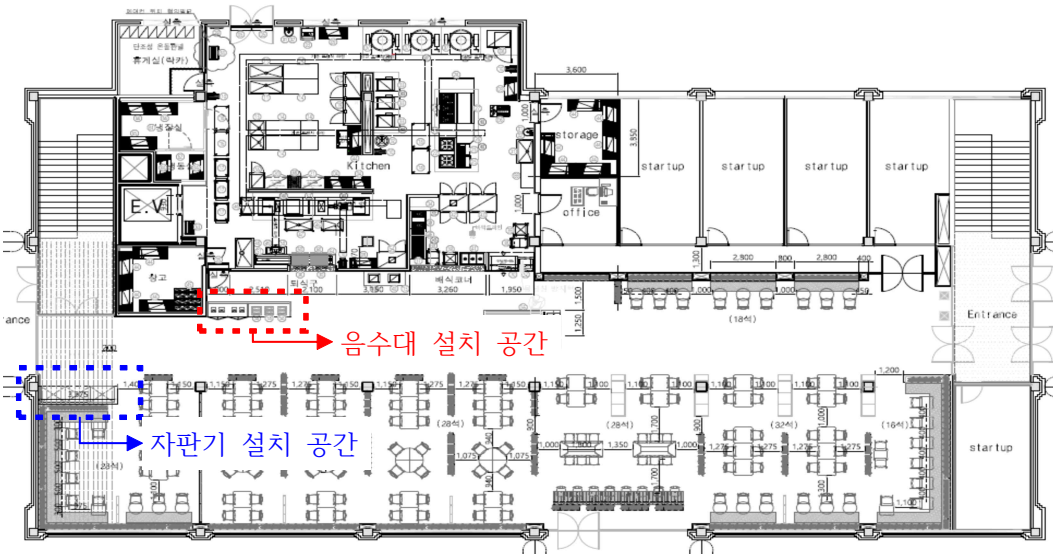

<컵 회수기 이미지>

<휴지통 이미지>

3. 가구 구성 (커뮤니티라운지에 한함)

1)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교류를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좌석
   - 장애인 사용이 가능한 좌석 반영 - 높낮이 조절용 테이블(4인) 1개
   -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전원 책상 배치
2) 개성 있는 디자인 및 실용성, 내구성, 활용성 등의 기능 지원이 필수임
   - 가구 디자인의 아름다움 이외에도 기능성과 내구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납품되는 가구는 브랜드(퍼시스, 리바트 등) 수준의 내구성을 갖추고, 사후 문제 발생 시 A/S가 확실한 업체여야 함
3) 가구 배치 시 가구의 높이, 의자/테이블 사이 간격 등이 사용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4) 자재: E0등급 자재사용 제품, 테이블 상판 24T이상
5) 제안서에 제시된 가구는 설치 전, 규격과 재질에 대해 반드시 학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함.

III 공사 상세 범위

1. 공사진행 목록

주요공사		금회공사(견적포함)	학교별도발주	비고
철거		○		
내부 공간 계획 및 인테리어 일체		○		
가구(제작가구, 기성가구)		○		
외부 캐노피 보수		○		
기계설비(냉난방, 자동제어)			○	천장형 EHP
전기공사	전기배선 일체		○	
	가구내 배선, 등기구	○		
랜/통신	랜/통신 배선 일체		○	
	가구내 배선	○		
소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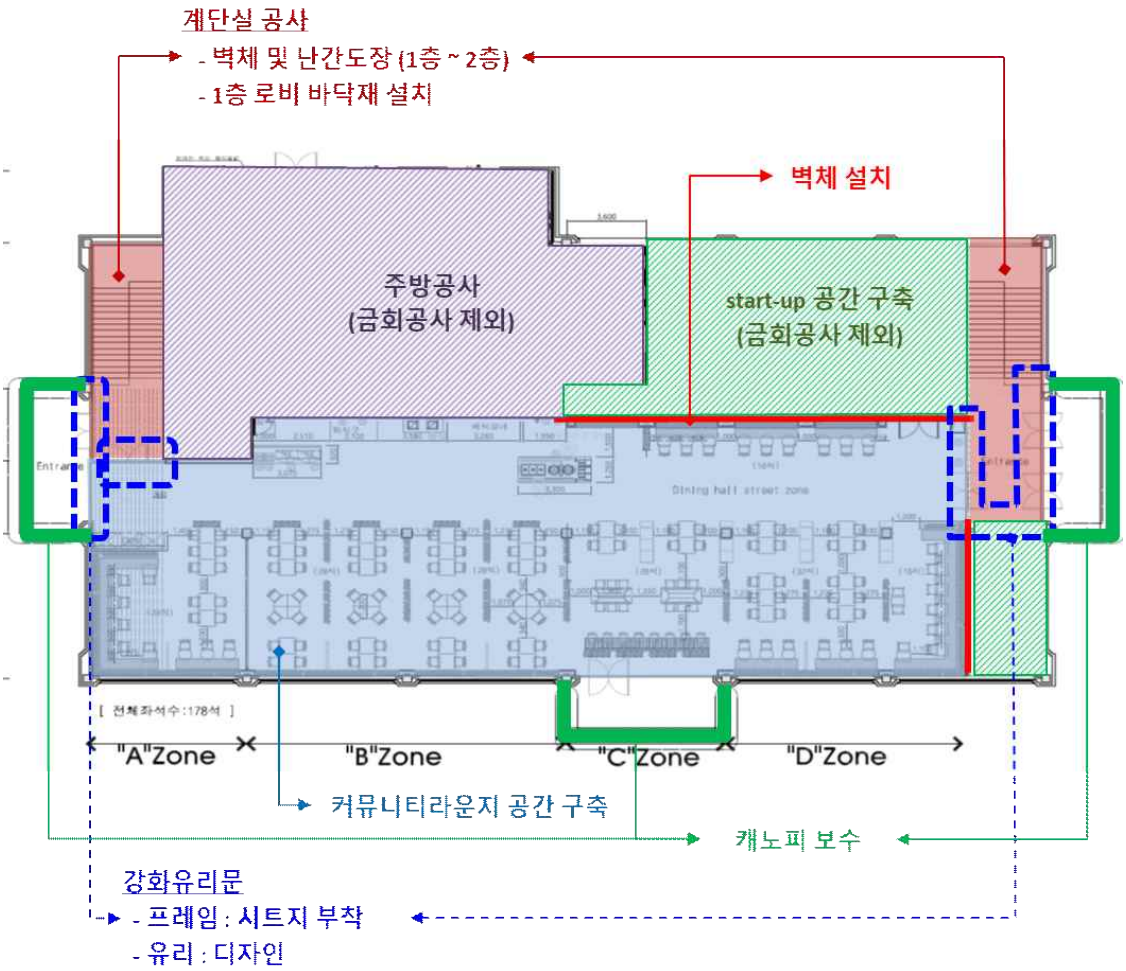

2. 기존 마감재 철거

- 공사 진행에 필요한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모두 포함.
  (단, 주요 구조체는 철거 불가)
- 기본 철거는 학교에서 진행 완료 하였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을 견적에 반영해야 함.

3. 내부 공간 계획 및 인테리어 일체

1) 기본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내부 마감재 제안
2) 천장 계획
   - 공간 계획에 따라 여러 마감재 사용 혹은 노출천장 가능.
   - 노출천장 시, 천장에 설치될 각종 설비 배관 및 트레이의 색상도 제안할 것.
   - 트레이의 설치는 제안내용에 따라 학교에서 별도 시행
3) 외부 창호에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horizontal blind (방염/우드) 설치
   - 전체 디자인에 맞추어 새로운 제안 가능
   - 외부 창호에 방충망 설치 포함
4) 출입문(강화유리문) 3개소 : 기존 출입문 유지
   - SST프레임 : 시트지 시공 / 강화유리: 디자인 시트 작업
5) 계단실
   - 벽체 및 난간 도장 / 1층 로비 바닥재 설치
6) 기타
   - 냉난방: 신규 EHP 설치(학교 별도 발주)
   - 소화전 위치 유지
   - 자재반입 및 작업자 이동 통로에는 보양지 설치

4. 캐노피 보수

- 기존 캐노피 벽면 위, 디자인 및 시공 (출입구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

5. 조명디자인

1) 전체적인 조명디자인을 계획하고, 그에 적합한 등기구 납품을 견적에 포함한다.
   - 등기구(일반) : 등기구 배치 및 납품
   - 가구부착등기구 : 등기구 배치 및 납품, 가구 내부 전기배선, 외부 연결용 배선

2) 학교 별도시행/인테리어 부분 견적제외사항
- 가구 부착 등기구 및 콘센트에 전원공급을 위한 가구 외부배선공사
- 가구 외부 배선 및 덕트
- 등기구 천장 설치를 위한 행거 덕트 및 기타 배관배선
- 콘센트 전원 및 랜배선 설치를 위한 덕트 설치

3) 램프 선정 기준(공통)
- LED(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 사용
- 단, 디자인 특성상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제외/적용 최소화

4) 전반조명 (인테리성) 등기구
- KSA 3011 조명설계기준(도서관)에 적합한 적정조도기준을 적용하여 등기구 수량 산정(등기구배치도 및 상세도 첨부)
- 적정 조도에 미달된다고 판단 시 추가 설치 등 조정가능

5) 가구 부착 등기구 및 콘센트
- LED(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외 타 램프 적용시 사유 명기할 것. (배치도 등 관계서류 제출)
- 가구 내부 전기배선, 외부 연결용 배선 포함(약 1~2M)
- 전기관련 법규에 적합한 배선처리

6) 기타 필요 사항 존재 시 도면 명기
- 인테리어업체에서 등기구 설치관련 특기 및 반영 사항

IV 견적조건

1. 모든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기준 및 관계법규를 준수해야 함.
2. 모든 자재는 KS 1급 제품을 사용하고, 시공 전 반드시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함. 또한 환경부 고시(제2008-82호/2011-156호)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이 제한된 오염물질방출 인테리어자재는 사용이 불가함.
3. 모든 자재는 건축법, 소방법 및 관련법의 각종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난연재 혹은 불연재를 사용함(소방 방염필증 제출)
4. 지급자재
   -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시설비는 업체 부담)
   - 상기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포함 견적
   - 기타 작업발판등 모든 가설자재는 지급치 않으며 설치 및 해체, 정리는 일체 시공자 부담임.
5. 기본계획(안) 및 현장실측에 의한 도면 작성, 물량과 단가를 표시한 내역서 제출 (물량산출 및 단가산정 잘못은 인정치 않음)
6. 4대보험,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를 내역에 포함하며, 공사 후 정산
   - 관계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 공사 및 정산완료에 따라 공사비 지급이 완료된 후라도, 학교 감사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으로 판정될 경우, 환수해야 함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2019년 개정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증액)계약이 가능함.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
7. 폐기물처리 및 준공청소까지 견적포함
8. 시공중 시공자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재해는 시공자 책임하에 처리
9. 공사시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학교에서 규정한 주차료 납부 포함
   (단, 덤프,지게차,레미콘,철근 츄레라는 제외)
   - 주차료 : 1,000원/2시간, 2,000원/4시간, 3,000원/당일, 30,000원/월
10. 공사기간 중 현장소장 1명 상주 조건
11. 필요시 로고 및 명판 제작: 학교 UI 활용
12. 모든 자재는 각 제품(회사)에서 권장하는 사용 및 시공방법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13. 현장 주위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최대한 학교 수업·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주

말, 휴일 작업도 진행한다. 공사공해(소음,진동,악취 등) 유발작업은 작업전 학교측과 협의 후 시행한다.

14. 본 공사 수행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5. 작업조건
    가. 세부 공정표를 공사 전에 시설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진행해야 함.
    나. 시공 시 각 공정별로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
    다. 현장 주위는 매일 깨끗이 청소하여 학업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할 것.
    라. 전기, 소방, 기계설비, 통신 및 LAN 공사는 별도 발주되므로 공사 중 각 공정간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는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함.

V 안전관리

1. 현장 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전 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각반, 마스크(코로나전염예방) 반드시 착용
   - 건물내 전 구간 마스크(코로나전염예방) 착용
2. 현장 내 절대 흡연금지 : 1회 적발시 해당 작업자 즉시 퇴출

VI 제안서 제출

1. 제안
   - 도면 - A3 10부
   - A1하드보드패널 2면 : 스케치업 등의 모델링 이미지 포함
   - 공사 지명원 - A4 1부
2. 디자인 평가
3. 최종견적금액 - 견적서 1부
   - 세부내역 분리: 인테리어공사 내역서, 가구내역서를 분리할 것
   - 최종금액은 세부내역을 집계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상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본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본교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출된 제안이나 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 / 서류 / 별첨자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한다.

VII 계약조건 (업체선정방식)

1. 업체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입찰공고

나) 입찰참가(제안서) 접수, 평가

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조건 협상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된 경우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 및 절차 의거, 차 순위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이 경우에도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라)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업체만 입찰참가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업체

마) 신용정보회사 혹은 건설공제조합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이상인 업체(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바) 2017.12.1. 이전 사업자 등록업체(확인서류 제출)

사)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60억원 이상인 업체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제출)

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학(교)에서 발주한 개보수 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가 단일건으로 2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3. 대금지급방식

가)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를 지급한다.

가) 본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금액 전액을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교는 본 항의 대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나) 본 조의 대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청구 및 지급시기와 그 방법은 본교의 회계 처리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본교는 필요에 의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VIII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식

가) 평가는 제안평가 60% 및 가격평가 40% 비율로 평가

나) 제안평가(60%) : 본교가 별도의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4조의 평가 기준 의거하여 평가실시

다) 가격평가(40%) :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

라) 위 평가배점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평가표 (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정량평가 지표	5	입찰업체의 신용평가등급
	5	입찰업체의 유사 사업실적 규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학(교) 개보수 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 실적 (단, 계약금액이 100,000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정성평가 지표 (디자인 평가)	10	전체적인 디자인의 작품성 및 기능성
	10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10	가구 디자인 및 실용성, 내구성, 활용성
	20	시공성 평가 / 사용 자재의 적절성
가격	40	
계	100	

※ 위 평가표 및 평가항목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아주대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방식 안내문(업체 공지용) 참고 요망

IX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시간 엄수하여 도착해야 한다.

나)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한다.

다) 제안요청서 상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본교 해석이 우선한다.

라) 본교는 필요 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제출된 제안서 / 서류 / 별첨자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부담 한다.

2. 문의처

가) 입찰 관련 : 구매관재팀 이지희 (031-219-2067)

나) 현장확인 관련 : 시설팀 홍영수 (031-219-2080)

- 현장 확인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3. 01. 02 18:00 까지
- 담당자 안내에 따라 확인 가능

다) 제안 내용관련 질의 :

- 질의: 2023. 01. 02. 14:00 / yshong@ajou.ac.kr 이메일로만 접수
- 응답: 2023. 01. 02. 18:00 일괄 답변

※ 첨부자료

1. 기숙사 식당 기본 계획(안) 및 도면 (별도 첨부)

2. 유사사업실적

3. 간접비 정산 확인서

[별지 2호 서식]

유사 사업실적

- 기재기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대학(교) 개보수 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 실적 (단, 계약금액이 100,000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구분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비고

※ 1.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2.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또는 3. 본교가 인정한 실적증명서류(위 정보 모두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필 날인 필) 제출바람. (확인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입찰취소 및 계약해제·해지 예정임)

확 인 서

▫ 업체명 :
▫ 이 름 :
▫ 부서 및 직책 :
▫ 사무실 연락처 :
▫ 핸드폰 번호 :

"아주대학교 기숙사 식당 1층 커뮤니티라운지 조성공사" 진행완료 후 4대보험,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명기된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발주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기존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미만으로 집행될 경우 미지급하며,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하지 않는다.
예외로 안전관리비 집행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2019년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증액)계약이 가능하다.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1. 4대보험

1) 국민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국민연금

○ 증빙서류
- 해당공단에서 발행된 개인별납입확인서
- 분리사업장으로 신고된 것만 인정 : 납입확인서에 공사명 기재된 것
- 사업자 부담분만 인정 : 납입확인서 금액의 1/2만 인정
- 하도급업체도 동일한 기준적용

○ 인정불가
- 시공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고 분리사업장(건설현장) 미신고로 인정불가

2) 고용보험/산재보험

○ 증빙서류 :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기재)

2. 안전관리비

○ 적용기준 :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증빙서류

1) 인건비성 :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 업무일지(날짜별 업무내용/시간), 날짜별 사진

2)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한 경우만 인정

3) 물품구매 :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반입사진, 설치사진, 설치위치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현장배경 물품 반입 사진(전수), 근로자 실착용사진(지급 물량 = 근로자 사진), 착용 후 작업사진, 지급대장(대상자 서명포함) 등
- 안전시설비: 설치 위치 표기 도면, 수량산출, 설치사진 등

4)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계약서, 이체확인증, 교육자료, 교육 사진 등

○ **인정불가**

- **<u>별첨자료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내역</u>**
- 안전시설 및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절대 인정불가
- 신호수 :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현장 외부에서 차량통제를 위한 신호수
- 안전시설 : 현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휀스 및 분진망 등

3. 환경보전비

○ 적용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증빙서류

- 인건비성 :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 업무일지(날짜별 업무내용/시간), 날짜별 사진
- 물품구매, 환경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료비 :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확인증,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구입물품 사진(전수), 작업 사진, 현장에 설치된 사진 등

○ 인정불가

- 현장청소 인건비,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단순 청소용품 : 마대, 마스크/장갑,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이, 집게, 삽 등)
- EGI 펜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환경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 폐기물 처리비(별도내역으로 지급)

※ 공통 유의사항

1) 공사착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사용계획서 제출시 승인된 목록 이외 항목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을 제출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변조하여 허위 작성하거나 준공 이후 변경발급 및 취소시 환수조치되며, 법적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2. . .

[별첨자료]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1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2.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방지시설 등 2)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호 관련)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호 관련)	1)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8. 본사 사용비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